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37
----------	-------

발의연월일 : 2022. 4. 7.

발의자 : 정우택 · 김상훈 · 이종성
구자근 · 윤영석 · 신원식
김학용 · 태영호 · 이종배
송석준 · 윤창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

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 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수화통역사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 촉수화통역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 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수화통역사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u>한국수어 통역사</u> ,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	<p>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 ----- -----<u>한국수어 통역사,</u> <u>촉수화통역사</u>----- ----- -----</p>

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